

부동산담보대출 상품설명서 (핵심)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-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<mark>반드시</mark>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◎ 유사한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

- 부동산담보대출은 아파트, 주택,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으로, 고객님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, 당사에 보유한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보험계약대출과 구분됩니다.
- 일반적으로 <mark>부동산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보다 금리가 낮으나</mark>,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
- ◎ 민원·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

Q1. 주택담보대출 관련 별도 약정을 체결했는데, 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?

→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된 별도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만기 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. 위반항목에 따라 향후 3년간 전 금융기관에서 주택, 전세 관련 대출 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약정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Q2.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?

→ 본인의 주택 소유여부,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Q3.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→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<mark>중도상환수수료</mark>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예: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, 최대 150만원 부과)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, 중도상환 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.

Q4.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?

→ 대출 이용 시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,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
Q5. 대출기간 동안 대출이자율과 이자 납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→ 고객님이 **변동금리나 혼합금리 방식**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실행시 적용되는 이자율 뿐만 아니라, 그 이후의 변동여부와 변동폭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금리 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금리변동 방식과 상환방법에 따라 향후 부담하셔야 하는 이자 납입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

◎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대출금 연체 시 <u>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, 이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</u>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

수 있습니다. (예: 대출원금이 1억원인 경우, 최대 월 연체이자 25만원 발생)

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[7.**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**]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◎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**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kbinsure.co.kr)** 또는 **대출콜센터(1544-9110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☞ 잠깐!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 ☜

" 부동산담보대출은 고객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"

◎ **대출의 변제기가 도래**하였거나 **기한의 이익이 상실**되었음에도 <u>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</u>, 보험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.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

"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"

◎ 부동산담보대출은 LTV·DTI·DSR 등 (하단 용어 설명 참고)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. 이는 대상 부동산의 지역과 담보가치, 채무자의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의 한도와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" 부동산의 위치·시세 등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의 가능여부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"

◎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,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,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" 주택을 이미 보유하는 경우, 추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"

- ◎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법령에서 정한 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거나, 실질용도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영위하고자 함일 때 등 주택보유 여부와 대상 주택의 지역, 대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◎ 다만, 고객이 기존에 보유중인 주택과 관련하여 처분·전입 등을 하기로 하는 **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**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" 주택담보대출 관련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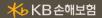
◎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계약 체결 시, 별도 이행이 필요한 약정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약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만기 전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,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로 분류되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.

■ 담보인정비율 (LTV. Loan-To-Value)

-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보험회사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.
- 총부채상환비율 (DTI, Debt-To-Income)
- 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(투기지역 등)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.
 - *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.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

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(DSR, Debt-Service-Ratio)

- 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 우 산출합니다.
- *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



(날인 또는 서명)

(날인 또는 서명)

부동산담보대출 상품설명서

(회사용)

대출상담사 고지의무 확인서

- □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출상담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아래 각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- □ 이 확인서는 대출상담사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증빙으로 활용되오니. 아래 질문사항을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○표 체크하시고 서명/날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설명 확인사항		
1. 대출상담사가 대리/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2. 하나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지, 아니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지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3. 대출상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거나,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출상담사 및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4. 대출상담사는 고객이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권한이 없으며, 계약의 직접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5. 대출상담사는 보험회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고객에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6. 고객님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·관리한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7. 대출상담사의 등록증명서(증표)를 확인하셨습니까?	예	아니오
8.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 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?		

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※ 대출모집인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작성인 담당 대출 상담사 ② 고객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: 인지세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

대출금액	5천만원이하	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	1억원초과 10억원이하	10억원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	15만원	35만원
고객부담	-	3만 5천원	7만 5천원	17만 5천원
회사부담	-	3만 5천원	7만 5천원	17만 5천원

③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

※ 다만,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 객이 부담합니다.

구분	부담하게 되는 금액
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	등록면허세+지방교육세+등기신청 법무사수수료 (예시) 대출금액 2억(채권최고액 2.2억) 기준 등록세 44만원 + 교육세 8.8만원 + 등기신청수수료 1.5만원 + 법무사수수료 19.9만원 ≒ 74.2만원
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	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(예시) 일반지역 15,000원, 원거리지역 22,000원
감정평가시 감정평가 수수료	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, 주소지,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(예시)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, 약 94만원 (수수료 88.4만원 + 실비 5.6만원)

- ◎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3조(비용 의 부담)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◎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<mark>채무자가 부담</mark>하여야 합니다.
- 3.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◎ 일반금융소비자는 *①계약체결일,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,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* 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)
- ◎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**서면**, **전화 등**으로 *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*를 해야 하며, 이 미 수령한 <u>대출금</u>과 이에 대한 <u>이자</u>, 대출과 관련하여 <u>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</u> 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◎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◎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___ **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【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】 ■ 대상 □ 비대상

나, 금리인하요구권

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◎ 금리인하요구권이란 <u>금융소비자가 [</u>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<u>]되었다고 판단</u>되는 경우**(취** 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[금리인하를 요구]할 수 있는 권리(보험업법 제110조의3)를 말합니다.
- ◎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홈페이지, 대출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 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 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◎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(정책자금대 출·집단대출 등)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1. 상품개요 및 상품의 특성

- · 상품명 : · 적용(예정)금리 : % · 대출(신청)금액: 원 · 중도성환수수료: 🗆 대상 (년 이내 %) 부과 여부 🗆 비대상 (인지세(고객부담):_
- · 금리적용방식: □변동 □고정 □혼합 · 대출/만: ___년 ___개월 중 거치기간 ___년
- · 휴일대출상환 : 🗆 대상 · 대출상환방법: 🗆 만기일시 🗆 원금균등분할 대상 여부 □ 비대상
 - □ 원리금균등분할 □ 기타
- 2. 수수료 등 비용부담
- √ **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**은 [<mark>대출금액과 이자, 아래의 수수료 등]</mark>을 합산한 **총액** 이며,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보험회사 담당자의 안내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◎ 중도상환수수료
- :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대출금액 × 중도상환수수료율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
- ☞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품에 따라 0.8%~1.5%입니다.
- (통상 고정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이 변동금리 방식보다 0.2%p 높습니다.)
- ☞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**3년까지 적용**합니다. 대출만기까지 **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**에 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보험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 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- (예시) 30년 만기 대출을 받고나서 6개월 후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 는 중도상환수수료는?

[가정] 중도상환수수료율 1.5% 로 3년간 적용, 면제비율 50% 적용

- 1 억원 * 50%(면제비율 제외) * 1.5% * (적용잔여기간 (=36개월-6개월) / 적용 기간 (=36개월)) = 약 625.000원
- ※ 적용잔여기간 및 적용기간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월 단위로 표시하였으나. 실제로 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.
- ◎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옵션
 - 상기 중도상환수수료에도 불구하고 **아래 옵션을 선택**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. 다만, **면제비율이 높은 상품**일수록 **대출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.**

유형	내용
약정비율 면제형	대출금액의 일정 비율(예 : 50% 약정)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옵션

- ◎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
- ①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

구분	부담하게 되는 금액
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/말소	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50,000원)
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 변경	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25,000원)
확인 서면 (등기필증이 없는 경우)	법무사 보수료 30,000원
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※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	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 X 일별 채권할인율(근 저당권 설정일 기준) (예시) '21.7.30일 기준 1억원 설정시 43,750원 부담

※ 본 계약서류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」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만기 일시상환

◎ 보험회사는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 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 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다. 위법계약해지권

- ◎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**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 18조제2항 위반)
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◎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년 이내**의 기간으 로 **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라, 자료열람요구권

- ◎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 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 에 관한 자료
- ◎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 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◎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 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4. 대출이자율

◎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**고정금리** 방식, **변동금리** 방식, **혼합금리** 방식으로 구분됩니다.



◎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대출금리는 보험회사의 자금조달급리에 각종 웹가요소와 목표이와를(미집)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 으로 **표시**된니다

			가산금리			
	대출 기준금리	리스크 프리미엄	리스크관리비용 등 원가	목표 이익률	○○ 가감조정 전결금리	# 최종 금리
-8		1271		3[70]	디트 그리 트이 이미워	DT

- **대출 기준금리**는 변동금리내술의 내술금리 변동 시 기순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COFIX, 국고채, 금융채,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 용하고 있습니다.
- ▶ **가산금리**는 보험회사가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 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.
- 리스크프리미엄: 보험회사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- 원가요소 : 고객의 신용도·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, 업무원가(인건비·전산처리 비용), 세금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- 목표이익률: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
- 가감조정 전결금리: 부수거래 감면금리(고객의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할 인금리), 전결 조정 금리 등
-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 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**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**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대출 상환방법

◎ 상환방법별 특징

원리금 균등상환		원금 균등상환	만기 일시상환
상환공역	→ 원리금 상환급 이자 <u>원금</u> [출기간	型 (상환금액 원급 원급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기간

"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 을 매 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 는 방식 "	" 대출원금 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"	"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 하는 방식 "
▶ 매월 총 상환금액이 동일 하며,이 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.	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 자가 계산되어, 매월 납입하 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.	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
▶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	▶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<u>즉시분할상환 방식</u> 과 일정기	

원금 균등상환

◎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・이자율・시기

원리금 균등상환

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

아나가는 <u>거치식분할상환 방</u>

<u>식</u>이 있습니다.

•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 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

아나가는 <u>거치식분할상환 방</u>

(1) 거치식/비거치식 비교 (대출금액1억원, 30년만기, 약정금리4,00%,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가정)

식이 있습니다.

상환방식	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	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
거치식 분할상환 (거치기간 3년)	<u>175,687,392 원</u>	1회 ~ 36회 : 333,333 원 (이자만 납부) 37회 ~ : 505,208 원
즉시 분할상환	<u>171,869,400 원</u>	1회 ~ : 477,415 원

(2) 상환방식 비교 (대출금액1억원, 3년만기, 약정금리4.00%, 비거치가정)

상환방식	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	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
만기일시	112,000,000 원	1회 ~ 35회 : 333,333 원 (이자만 납부) 36회 : 100,333,333 원
원리금균등 분할상환	106,286,328 원	1회 ~ 36회 : 2,952,398 원

- ※ 상기 정보는 거치식 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이용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공되는 예시이며, 실제 상환액은 대출이 승인된 금액, 이자율 및 금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- ◎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
-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 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**상환 부담이 증가**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 번에 상환해야 하며, **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** 있습니다.
- ◎ 만기 상환시의 대출금 상환 방법
- 영업점을 내방하시거나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, 대출콜센터를 통하여 편리하신 방법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.
 - KB손해보험 홈페이지 : www.kbinsure.co.kr
 - 대출콜센터 : 1544-9110
- 대출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대출콜센터 사전상담 후 가상계좌를 통해 휴일 중에도 상 환이 가능합니다. (중도 상환의 경우에는 홈페이지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처리 가 가능합니다.)
- 만기상환시 마지막 원금, 이자금액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

- ※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**재산상 손실**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 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◎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, 보험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(저당권)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◎ 담보권의 설정 : 부동산담보대출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남보권	대상 대술상품	남보의대상	남보권설성의설자
근저당권	부동산담보대출	담보로 제공한 부동산	▶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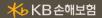
◎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

-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<mark>유권을 상실</mark>하게 됩니다.
- ※ 용어의 소개
- ▶ **담보권**이란 대출금액 미상환 시 보험회사가 해당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 미합니다
- **담보물**이란 담보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- ▶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, 설정자(채무자 또는 제3자)가 제 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 ▶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, 보험회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말합니다.
- ※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**즉시 상환**하여야 하며, 연체이자 부담, 일정기 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**반드시**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.

7.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© 연체이자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 3%]로 적용하며, 연체이자 율은 최고 연 19%입니다.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이자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
	구분	연체기간	연체이자율
	주택담보대출 (아파트, 주택)	2개월 이내	납입 지연된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		2개월 초과	총 대출 잔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	주택담보대출 이외	1개월 이내	납입 지연된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	(오피스텔)	1개월 초과	총 대출 잔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
◎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
❶「<u>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</u>

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(오피스텔담보대출의 경우 1개월)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2개월(오피스텔담보대출의 경우 1개 월)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**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** 연체이 자를 내셔야 합니다.

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⑤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3 회 이상(오피스텔담보대출의 경우 2회)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 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₫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 <u>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</u>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※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 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**됨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
- ◎ 기한의 이익 상실로 만기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
-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을 일정기간 연체한 경우 (상기 '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' 찬조)
- 채무자인 고객 소유의 제예치금(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),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,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(가)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-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(또는 해당)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 셔야 합니다.
- 보험회사에 대한 **수개의 대출채무 중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** 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
 -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**독촉·통지한 기간 경과시 모든(또는 해당) 대출금을 즉시 상환** 하셔야 합니다.
- ※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◎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 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◎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 -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◎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**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**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**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**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.

8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◎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 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◎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-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-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(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)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9. 관련법령상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제한사항

- ◎ 보험회사는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LTV, DTI 및 기 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© 기존 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, 법령 등에서 정한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의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[고객이 기존에 보유증인 주택과 관련하여 처분·전입 등을 하기로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]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동 **산담보대출을 취급**할 수 있습니다.

- ☞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부 동산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아 해당 대출을 상환(대환)하고자 하는 경우,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별도 약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, 별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취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☞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해당 부동산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, 보험회사는 별도 약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, 별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0.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 경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11. 기타 유의사항

- ◎ 고가주택보유자의 경우 DTI와 별도의 DSR 등 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.
- ◎ 보험회사는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연소득 대비 연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 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
-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**3년 이내의 기간**에만 부여됩니다.
-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(등기설정·말 소비용, 감정수수료 등)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.

◎ 이자 납입방법

-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예:매월)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
-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 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납입지정일 이후 보험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 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- ◎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 거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2.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 아래 주요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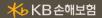
- 부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대출가능 여 부 및 금리, 한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의 상담을 받으셨나요?
- ① 예 / ② 아니오
-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<u>3년 이내의 기간 동안</u>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.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
 - ① 예 / ② 아니오
-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되며, 고객님께서는 **대출받은 금액을 즉시 상환**하여야 합 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
- ① 예 / ② 아니오 / ③ (오피스텔의 경우) 해당없음

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 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된 부

-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 에 가입하시겠습니까?
- ① 예 / ② 아니오
- ◈ 본인은 KB손해보험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(주요 내용) 및 (고객부담 비용)에 대하 여 충분히 (설명을 듣고 이해) 하였으며, 상품설명서를 (교부)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- ◈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(권리)에 대하여 충분히 (설명을 듣고 이해)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◈ (적정성 판단결과가 부적정인 경우) 해당사실을 안내받고 적정성 판단결과 보고서를 (수령하였음을) 확인합니다.
- ◈ 상기 **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**에서 **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** 경우,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
<u>상담일자 : 20</u> 상담자 : 직위 (서명/인) <u>/ 고객확인 : 성명</u> (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당사 **대출콜센터(1544-9110)**, 또는 당사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kbinsure.co.kr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 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** 또는 **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부동산담보대출 상품설명서

(고객용)

대출상담사 고지의무 확인서

- □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출상담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아래 각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- □ 이 확인서는 대출상담사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증빙으로 활용되오니, 아래 질문사항을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O표 체크하시고 서명/날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설명 확인사항		
1. 대출상담사가 대리/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2. 하나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지, 아니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지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3. 대출상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거나,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출상담사 및 보험회사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4. 대출상담사는 고객이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권한이 없으며, 계약의 직접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5. 대출상담사는 보험회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고객에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6. 고객님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·관리한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?	예	아니오
7. 대출상담사의 등록증명서(증표)를 확인하셨습니까?	예	아니오
8.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 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?		

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※ 대출모집인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작성인

(날인 또는 서명) (날인 또는 서명)

1. 상품개요 및 상품의 특성

대출(신청)금액: ______원 · 중도성환수수료: □ 대상 (___년 이내 ____%) (인지세(고객부당: _____원) 부과 여부 □ 비대상

· 금리적용방식: □변동 □고정 □혼합 · 대출/만: ___년 ___개월 중 거치기간 ___년

· 휴일대출상환: □ 대상 · 대출생형방법: □ 만기일시 □ 원금균등분할 대상 여부 □ 비대상 □ 원리금균등분할 □ 기타

2. 수수료 등 비용부담

√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[대출금액과 이자, 아래의 수수료 등]을 합산한 총액이며,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보험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◎ 중도상환수수료

-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대출금액 × 중도상환수수료율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
- ☞ **중도상환수수료율**은 상품에 따라 0.8%~1.5%입니다.
- (통상 고정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이 변동금리 방식보다 0.2%p 높습니다.)
- ➡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. 대출만기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보험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 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- (예시) 30년 만기 대출을 받고나서 6개월 후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?

[가정] 중도상환수수료율 1.5% 로 3년간 적용, 면제비율 50% 적용

1 억원 * 50%(면제비율 제외) * 1.5% * (적용잔여기간 (=36개월-6개월) / 적용기간 (=36개월)) = 약 625,000원

※ 적용찬여기간 및 적용기간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월 단위로 표시하였으나, 실제로 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.

◎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옵션

• 상기 중도상환수수료에도 불구하고 **아래 옵션을 선택**한 경우 **중도상환수수료 면제**가 가능합니다. 다만, **면제비율이 높은 상품**일수록 **대출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.**

유형	내용
약정비율 면제형	대출금액의 일정 비율(예 : 50% 약정)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옵션

◎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

①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

구분	부담하게 되는 금액
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/말소	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50,000원)
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 변경	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25,000원)
확인 서면 (등기필증이 없는 경우)	법무사 보수료 30,000원
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	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 X 일별 채권할인율(근 저당권 설정일 기준)
※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	(예시) '21.7.30일 기준 1억원 설정시 43.750원 부담

② 고객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 : 인지세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

대출금액	5천만원이하	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	1억원초과 10억원이하	10억원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	15만원	35만원
고객부담	-	3만 5천원	7만 5천원	17만 5천원
회사부담	-	3만 5천원	7만 5천원	17만 5천원

③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

※ 다만,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

구분	부담하게 되는 금액	
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	등록면허세+지방교육세+등기신청 법무사수수료 (예시) 대출금액 2억(채권최고액 2.2억) 기준 등록세 44만원 + 교육세 8.8만원 + 등기신청수수료 1.5만원 + 법무사수수료 19.9만원 ≒ 74.2만원	
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	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(예시) 일반지역 15,000원, 원거리지역 22,000원	
감정평가시 감정평가 수수료	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, 주소지,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(예시)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, 약 94만원 (수수료 88.4만원 + 실비 5.6만원)	

- ◎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3조(비용의 부담)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◎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3.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◎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,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,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)
- ◎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,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사를 해야 하며, 이 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인자,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◎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©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<u>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</u>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볼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
【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】 ■ 대상 □ 비대상

나. 금리인하요구권

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[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]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: 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[금리인하를 요구]할수 있는 권리(보험업법 제110조의3)를 말합니다.
- ◎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홈페이지, 대출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 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 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©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(정책자금대출·집단대출 등)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.
- ※ 본 계약서류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」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만기 일시상환

◎ 보험회사는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 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 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다. 위법계약해지권

- ◎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**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 18조제2항 위반)
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◎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년 이내**의 기간으 로 **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라, 자료열람요구권

- ◎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 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 에 관한 자료
- ◎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 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◎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 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4. 대출이자율

◎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**고정금리** 방식, **변동금리** 방식, **혼합금리** 방식으로 구분됩니다.



◎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대출금리는 보험회사의 자금조달급리에 각종 웹가요소와 목표이와를(미집)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 으로 **표시**된니다

			가산금리			
	대출 기준금리	리스크 프리미엄	리스크관리비용 등 원가	목표 이익률	○○ 가감조정 전결금리	# 최종 금리
-8		1271		3[70]	디트 그리 트이 이미워	DT

- **대출 기준금리**는 변동금리내술의 내술금리 변동 시 기순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COFIX, 국고채, 금융채,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 용하고 있습니다.
- ▶ **가산금리**는 보험회사가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 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.
- 리스크프리미엄: 보험회사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- 원가요소 : 고객의 신용도·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, 업무원가(인건비·전산처리 비용), 세금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- 목표이익률: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
- 가감조정 전결금리: 부수거래 감면금리(고객의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할 인금리), 전결 조정 금리 등
-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 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**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**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대출 상환방법

◎ 상환방법별 특징

원리금 균등상환		원금 균등상환	만기 일시상환
상환공역	→ 원리금 상환급 이자 <u>원금</u> [출기간	型 (상환금액 원급 원급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기간

"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 을 매 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 는 방식 "	" 대출원금 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"	"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 하는 방식 "
▶ 매월 총 상환금액이 동일 하며,이 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.	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 자가 계산되어, 매월 납입하 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.	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
▶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	▶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<u>즉시분할상환 방식</u> 과 일정기	

원금 균등상환

◎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・이자율・시기

원리금 균등상환

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

아나가는 <u>거치식분할상환 방</u>

<u>식</u>이 있습니다.

•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 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

아나가는 <u>거치식분할상환 방</u>

(1) 거치식/비거치식 비교 (대출금액1억원, 30년만기, 약정금리4,00%,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가정)

식이 있습니다.

상환방식	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	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
거치식 분할상환 (거치기간 3년)	<u>175,687,392 원</u>	1회 ~ 36회 : 333,333 원 (이자만 납부) 37회 ~ : 505,208 원
즉시 분할상환	<u>171,869,400 원</u>	1회 ~ : 477,415 원

(2) 상환방식 비교 (대출금액1억원, 3년만기, 약정금리4.00%, 비거치가정)

상환방식	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	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
만기일시	112,000,000 원	1회 ~ 35회 : 333,333 원 (이자만 납부) 36회 : 100,333,333 원
원리금균등 분할상환	106,286,328 원	1회 ~ 36회 : 2,952,398 원

- ※ 상기 정보는 거치식 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이용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공되는 예시이며, 실제 상환액은 대출이 승인된 금액, 이자율 및 금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- ◎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
-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 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**상환 부담이 증가**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 번에 상환해야 하며, **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** 있습니다.
- ◎ 만기 상환시의 대출금 상환 방법
- 영업점을 내방하시거나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, 대출콜센터를 통하여 편리하신 방법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.
 - KB손해보험 홈페이지 : www.kbinsure.co.kr
 - 대출콜센터 : 1544-9110
- 대출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대출콜센터 사전상담 후 가상계좌를 통해 휴일 중에도 상 환이 가능합니다. (중도 상환의 경우에는 홈페이지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처리 가 가능합니다.)
- 만기상환시 마지막 원금, 이자금액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

- ※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**재산상 손실**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 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◎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, 보험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(저당권)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◎ 담보권의 설정 : 부동산담보대출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남보권	대상 대술상품	남보의대상	남보권설성의설자
근저당권	부동산담보대출	담보로 제공한 부동산	▶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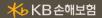
◎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

-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<mark>유권을 상실</mark>하게 됩니다.
- ※ 용어의 소개
- ▶ **담보권**이란 대출금액 미상환 시 보험회사가 해당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 미합니다
- **담보물**이란 담보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- ▶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, 설정자(채무자 또는 제3자)가 제 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 ▶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, 보험회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말합니다.
- ※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**즉시 상환**하여야 하며, 연체이자 부담, 일정기 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**반드시**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.

7.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© 연체이자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 3%]로 적용하며, 연체이자 율은 최고 연 19%입니다.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이자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
	구분	연체기간	연체이자율
	주택담보대출 (아파트, 주택)	2개월 이내	납입 지연된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		2개월 초과	총 대출 잔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	주택담보대출 이외	1개월 이내	납입 지연된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	(오피스텔)	1개월 초과	총 대출 잔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
◎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
❶「<u>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</u>

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(오피스텔담보대출의 경우 1개월)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2개월(오피스텔담보대출의 경우 1개 월)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**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** 연체이 자를 내셔야 합니다.

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⑤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3 회 이상(오피스텔담보대출의 경우 2회)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 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₫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 <u>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</u>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※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 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**됨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
- ◎ 기한의 이익 상실로 만기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
-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을 일정기간 연체한 경우 (상기 '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' 찬조)
- 채무자인 고객 소유의 제예치금(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),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,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(가)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-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(또는 해당)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 셔야 합니다.
- 보험회사에 대한 **수개의 대출채무 중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** 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
 -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**독촉·통지한 기간 경과시 모든(또는 해당) 대출금을 즉시 상환** 하셔야 합니다.
- ※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◎ **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**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 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◎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 -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◎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**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**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**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**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.

8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◎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 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◎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-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-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(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)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9. 관련법령상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제한사항

- ◎ 보험회사는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LTV, DTI 및 기 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© 기존 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, 법령 등에서 정한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의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[고객이 기존에 보유증인 주택과 관련하여 처분·전입 등을 하기로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]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동 **산담보대출을 취급**할 수 있습니다.

- ☞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부 동산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아 해당 대출을 상환(대환)하고자 하는 경우,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별도 약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, 별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취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☞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해당 부동산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, 보험회사는 별도 약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, 별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0.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 경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11. 기타 유의사항

- ◎ 고가주택보유자의 경우 DTI와 별도의 DSR 등 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.
- ◎ 보험회사는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연소득 대비 연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 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
-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**3년 이내의 기간**에만 부여됩니다.
-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(등기설정·말 소비용, 감정수수료 등)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.

◎ 이자 납입방법

-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예:매월)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
-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 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납입지정일 이후 보험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 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- ◎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 거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2.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 아래 주요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부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, 시세,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대출가능 여 부 및 금리, 한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의 상담을 받으셨나요?
- ① 예 / ② 아니오
-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<u>3년 이내의 기간 동안</u>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.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
 - ① 예 / ② 아니오
-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되며, 고객님께서는 **대출받은 금액을 즉시 상환**하여야 합 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
- ① 예 / ② 아니오 / ③ (오피스텔의 경우) 해당없음

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 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된 부

-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 에 가입하시겠습니까?
- ① 예 / ② 아니오
- ◈ 본인은 KB손해보험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(주요 내용) 및 (고객부담 비용)에 대하 여 충분히 (설명을 듣고 이해) 하였으며, 상품설명서를 (교부)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- ◈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(권리)에 대하여 충분히 (설명을 듣고 이해)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◈ (적정성 판단결과가 부적정인 경우) 해당사실을 안내받고 적정성 판단결과 보고서를 (수령하였음을) 확인합니다.
- ◈ 상기 **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**에서 **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** 경우,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
<u>상담일자 : 20</u> 상담자 : 직위 (서명/인) <u>/ 고객확인 : 성명</u> (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당사 **대출콜센터(1544-9110)**, 또는 당사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kbinsure.co.kr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 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** 또는 **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